

ICC중재에서 중재비용의 결정과 할당에 관한 연구

오 원 석*

-
- I. 서론
 - II. 중재비용의 구성
 - III. 중재비용의 결정
 - IV. 중재비용의 할당
 - V. 결론
-

I. 서론

국제중재를 취급하는 대표적인 중재기관은 ICC, LCIA, AAA, WIPO 및 ICSID 등이 있으나 이 가운데 ICC중재가 취급하는 사건의 수나 판정에 대한 신뢰도면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ICC중재는 사건에 쟁점정리사항서(Terms of Reference)의 작성, ICC중재법원(ICC Court of Arbitration)의 판정문 초안 검토(Scrutiny) 및 중재당사자의 중재비 균등예납 등에서 다른 기관에 비하여 특징적 차이를 지닌다.

이 가운데 논자는 추후의 연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재비용의 균등 예납과 관련하여 먼저 ICC중재규칙(ICC Rules of Arbitration, 1998) 제31조를 중심으

* 성균관대학교 교수

로 관련 중재비용의 종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들 비용은 누가 결정하며, 이렇게 결정된 비용은 당사자 간 어떻게 할당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중재비용”이라는 용어는 2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하나는 광의로 해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중재인의 보수, ICC관리비용, 당사자의 법적비용과 기타비용을 포함하지만, 협의로 해석하면 중재인의 보수 및 ICC관리비용만을 지칭한다. 이에 대한 독자의 개념상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의의 중재비용” 또는 “협의의 중재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II. 중재비용의 구성

ICC중재규칙 제3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재비용은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시행중인 보수비율에 따라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 및 ICC관리비용과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모든 전문가의 보수와 경비 및 중재당사자에 의하여 발생된 상당한 법적비용과 기타비용(reasonable legal and other costs)도 포함된다.”

본 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중재비용의 구성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즉 여기에는 중재인의 보수 및 비용, ICC관리비용,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의 보수 및 비용, 그리고 중재당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법적비용과 기타비용을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1. 중재인 보수

중재인의 보수는 동 규칙 제2항에 따라 그 기준에서 이탈할 수 있으나 중재인 보수요율표¹⁾에 따라 중재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적용되는 보수요율표는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 시행중인 보수요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종종 당사자들은 중재합의 시 시행되는 보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중재합의 후 여러 해 뒤에 중재가 개시될 경우 중재인은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다.²⁾

1) Arbitrator's Fees

보수요율표는 분쟁금액을 기준으로 각 중재인에게 적용될 최저 및 최고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될 경우 중재법원은 의장중재인의 보수와 공동중재인의 보수를 나누어 결정한다. 이들 중재인간의 보수배분에 관하여는 ICC중재규칙과 부록III(Appendix III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에 명시가 없어도 통상 의장중재인에게 총금액의 40%, 그리고 공동중재인 각각에게 30%씩 지급하는 것이 중재법원의 오랜 관행이다.

보수비율은 중재에 대한 중재인의 모든 현금지출(out-of-pocket disbursement)을 커버하기 위한 의도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그것은 중재인 보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 또는 각종 부과금을 포함하지 않는다.³⁾ ICC의 오랜 관행은 이러한 세금이나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회복하는 문제를 중재인에게 맡기면서, 당사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당사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중재인의 보수가 중재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결정시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무에서 중재인의 보수는 동 규칙 제27조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초안이 승인된 이후나, 만약 중재가 판정 없이 철회되었다면 철회 후 중재종결 시에 중재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렇지만 중재인이 교체될 경우 중재법원은 보다 일찍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법원이 중재인 보수를 결정할 때 분쟁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무국의 권리와 동 규칙 부록III 제2조 제2항에 명기된 각종 기준, 즉 중재인의 성실성,

Sum in dispute (in US Dollars)	Fees	
	minimum	maximum
up to 50 000	2 500	17.00%
from 50 001 to 100 100	2.00%	11.00%
from 100 001 to 500 000	1.00%	5.50%
from 500 001 to 1 000 000	0.75%	3.50%
from 1 000 001 to 2 000 000	0.50%	2.75%
from 2 000 001 to 5 000 000	0.25%	1.12%
from 5 000 001 to 10 000 000	0.10%	0.616%
from 10 000 001 to 50 000 000	0.05%	0.193%
from 50 000 001 to 80 000 000	0.03%	0.136%
from 80 000 000 to 100 000 000	0.02%	0.112%
over 100 000 000	0.01%	0.056%

2) R. M. O'Conor,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Arbitration Rules for the Time Being: China Agribusiness v. Balli Trading", Int. Arb. L. R., Vol.1, No.1(1997), p.44.

3) ICC Rules of Arbitration, Appendix III, Art. 2(9).

소요된 시간, 진행속도 및 분쟁내용의 복잡성 등에 대한 평가가 고려된다.

사무국은 중재인에게 그들이 중재에 소요된 시간을 알려주도록 요구한다. 이는 중재법원이 필요할 경우 예납금을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단 판정초안이 중재법원에 제출되면 중재법원은 예납금을 조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재인들이 종종 중재에 소요된 시간을 사무국에 알려주지 않아 나중에 자신들이 받은 보수에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중재인의 보수결정에서 중재인이 해당사건의 중재에 투여한 시간과는 별도로 중재를 진행하는 성실성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비록 중재 진행속도가 중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겠지만 중재인이 자신의 임무수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때 중재법원은 이를 보수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역으로 중재인의 보수가 성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중재법원은 예납금 가운데 상응하는 금액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중재인 보수를 결정하고 예납금의 일부를 당사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예납금 납입비율로 상환된다. 예납금 일부의 당사자에 대한 환불은 중재가 최종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철회되거나 중재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

한편 ICC중재규칙이나 부록III은 중재진행 중 중재인이 사임, 사망 또는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중재인이 교체된 경우 중재인의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재인의 교체 원인이 중재인에게 있다면 중재인은 보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반드시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법원의 결정은 모든 상황, 중재진행과정 및 중재과정의 반복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더구나 교체된 중재인에게 어떤 하자가 없는 경우까지도 수행된 전체 작업 분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중재법원은 당사자가 중재인이 수행한 같은 작업에 대하여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대부분의 중재인 보수가 판정통지에 따른 중재종결 후에 지급되지만, 중재인의 요청이 있고 중재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 단계가 되면, 그 이전에도 중재법원은 중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그러한 선납의 1차분은 통상 쟁점정리사항서의 완료시에 행하여진다.⁴⁾

중재법원은 중재인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교체될 경우에 대비, 그 보수를 일

정액 이상 선납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은 중재인이 가능한 속히 최종판정을 내리도록 동기부여를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진행 중인 미완성 사건에 대하여 ICC가 중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중재인이 진행 중인 중재 작업에 대한 재원조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⁵⁾ 결국 중재인들은 ICC중재규칙 제13조에 따라 중재서류가 자신들에게 송부되어 오기까지 중재법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실제로 ICC는 중재서류의 송부 조건인 예납금의 지급 시까지 중재인에게 보상할 입장에 있지 않다. 그렇지만 공동중재인(Co-arbitrators)이 당사자의 요청을 받고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ICC에 중재비용을 납입하기 전 중재가 철회된다면 공동중재인은 자신들의 보수와 비용측면에서 보상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 중재에 시간과 금전을 투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법원은 중재인의 보수가 ICC로 하여금 최고수준의 중재인을 계속 선임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은 물론, 비교적 경제적 절차에 따른 당사자의 기대를 감안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중재인들과 당사자들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과거에는 ICC중재비용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중재인 보수의 경우 기관중재는 임의중재절차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2. 중재인 경비

ICC중재규칙 제31조 제1항은 중재인의 보수(fee)와 함께 경비(expense)를 나누어 언급하면서 보수와는 달리 이에 관한 정의도 없고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설명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법원의 관행은 중재인 보수 외에 중재인이 별도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경비가 있음을 인식해 왔다. 이러한 경비는 중재법원에서 결정되지도 않고 보수요율표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사무국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준으로 발생할 당시 중재인의 신청에 따라 중재인

4) D. Byrne, "Payment of Advances on Fees to Arbitrators in ICC Proceedings", *ICC Ct. Bull.*, Vol.7. No.2(1996), p.84.

5) J. G. Wetter and C. Priem, "Costs and their Alloca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m. Rev. Int. Arb.*, Vol.2(1991), p.249, p.318.

에게 지급된다.

중재인 경비도 중재인 보수와 함께 중재법원이 결정한 예납금에서 지급되므로 중재법원의 예납금 결정에 영향을 준다. 중재법원은 중재인 보수와 경비의 금액과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예납금을 결정하므로 결국 그 총액은 중재법원이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중재인 보수가 결정되면 사무국은 동 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라 중재 경비와 함께 중재판정문에 포함시켜 이를 중재인에게 통지하거나 만약 판정이 없다면 문제의 금액을 중재인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사무국은 통상 중재인과 당사자에게 중재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비의 세부적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다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중재인 경비의 상환지침을 발행한다.⁶⁾ 이에 해당되는 항목은 중재인 교통비, 숙식비 및 회의실 임대료, 사무지원비 그리고 전화나 팩스 등 통신비 등이다. 그러나 사무국의 지침은 포괄적이지 못하여 어떤 비용이 이것으로 인정되기에 타당한지에 관하여 종종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퇴임한 법학교수가 중재인 선임에 동의하고 자신의 거주지 밖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중재인으로 활동할 동안 비서를 고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중재인 경비로 보상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이 어느 정도가 중재인 보수로 커버되고 어느 정도가 중재인 경비로 인정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⁷⁾ ICC중재규칙 부록III에 나타난 중재인 보수비율은 중재판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수행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통상적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화나 텔레스 및 여행과 관련된 일시적 지급비용은 제외되며, 이것은 중재인 비용으로 커버된다.

중재인 개인의 행정비서에 대한 보상은 중재인 보수로 커버되기 때문에, 만약 이를 중재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원한다면 별도의 약정이 되도록 당사자들을 유도하여야 한다. 결국 중재법원은 그 성격과 관계없이 중재인 전체 보상의 주체이다.

6) Appendix 4(a); "Revised Notice to Arbitrators: Personal and Arbitral Tribunal Expenses" (Jan.1.2005).

7) M. Bühler, "Costs in ICC Arbitration: A Practitioner's View", Am. Rev. Int. Arb.(1992), p.133.

3. ICC관리비용

ICC관리비용(ICC administrative expenses)도 중재인의 보수와 함께 중재절차의 개시 시에 시행비율에 따라 중재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⁸⁾ 그렇지만 이것은 중재인의 보수와는 달리 분쟁금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비용의 총액은 단순히 수학적 계산으로 결정된다. ICC관리비용은 중재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커버할 뿐 아니라, 특별한 경우, 예컨대, 우편, 국제특송서비스, 전화, 팩스 또는 사전복사 등과 관련한 중재법원의 모든 지출부분을 커버한다. 사건의 관리가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관리비용은 분쟁금액이 달라지지 않는 한 변함이 없다. ICC의 관리비용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LCIA중재와는 달리 사전에 계산이 가능하다.

중재가 최종판정 전에 철회된 경우 관리비용도 중재인 보수와 같이 중재가 진행된 단계와 중재법원이 수행한 작업을 평가하여 사전에 계산된 금액에서 줄어들 것이다. 중재법원과 사무국의 관리업무는 중재의 초기단계에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재법원의 관행에 따르면 쟁점정리사항서가 작성된 단계에서의 관리비용은 전체의 50%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에 당사자가 ICC에 납부할 금액은 중재신청(Request for Arbitration)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현재는 미화 2,500달러이다. ICC의 관리비용은 다른 중재기관과 비교하여

8) ICC Administrative Expenses

Sum in dispute (in US Dollars)	Administrative Expenses (in US Dollars)
up to 50 000	2 500
from 50 001 to 100 100	2 500 +3.50% of amt. over 50 000
from 100 001 to 500 000	4 250 +1.70% of amt. over 100 000
from 500 001 to 1 000 000	11 050 +1.15% of amt. over 500 000
from 1 000 001 to 2 000 000	16 800 +0.70% of amt. over 1 000 000
from 2 000 001 to 5 000 000	23 800 +0.30% of amt. over 2 000 000
from 5 000 001 to 10 000 000	32 800 +0.20% of amt. over 5 000 000
from 10 000 001 to 50 000 000	42 800 +0.07% of amt. over 10 000 000
from 50 000 001 to 80 000 000	70 800 +0.06% of amt. over 50 000 000
from 80 000 000 to 100 000 000	88 800
over 100 000 000	88 800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재법원과 사무국의 기능이 독특하고 보다 정밀한 기능을 갖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전문가의 비용

ICC중재규칙 제31조 제1항에서 언급한 「전문가의 보수와 경비」(fees and expenses of any experts)는 당사자가 선임한 전문가가 아닌 중재판정부가 선임한 전문가를 말한다.⁹⁾ 이러한 비용은 중재법원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확정되는 별도의 예납금으로 충당된다.¹⁰⁾

위의 조항에서 언급한 전문가의 비용에는 중재판정부가 선임한 전문가의 비용만을 커버하도록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에 의하여 선임된 전문가의 비용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논자는 이러한 비용이 다음에 언급할 당사자 비용으로 커버될 것으로 본다.

5. 당사자의 비용

ICC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앞에서 언급한 비용외의 「당사자에 의해 발생된 상당한 법적 비용과 기타 비용」(the reasonable legal and other costs incurred by the parties)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소 막연한 표현은 ICC중재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큰 재량권을 갖도록 하고자 삽입되었다. 동 규칙에는 이러한 비용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文言 해석은 매 사건별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¹¹⁾

9) ICC Rules of Arbitration, Art.20(4); "The Arbitral Tribunal, after having the parties, may appoint one or more experts....."

10) ICC Rules of Arbitration, Appendix III, Art.1(11); "Before any expertise ordered by the Arbitral Tribunal can be commenced the parties, or one of them, shall pay an advance on costs fixed by the Arbitral Tribunal sufficient to cover the expected fees and expenses of the Tribunal sufficient to cover the expected fees and expenses of the expert as determined by the Arbitral Tribunal".

11) ICC 중재규칙 제31조 제1항은 광의의 표현을 사용한데 반하여 UNCITRAL 중재규칙 제38조는 협의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UNCITRAL Arbitration Rules, Art. 38(c); "The costs of expert advice and of other assistance required by the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법정 변호인의 보수와 비용, 전문가 고문 및 증인의 비용, 서류의 제출이나 심문을 해석하는데 따른 비용, 통역 및 번역에 따른 비용 등이 있다.¹²⁾ 그렇지만 중재인들 간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비용, 예컨대, 부수적 사법절차와 관련된 비용의 허용가능성 또는 사내 법률담당 직원을 포함한 당사자 회사의 소속직원들의 소요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다.¹³⁾

또한 한 당사자의 비용에 대한 재판 전 이해관계(pre-judgement interest)에 관한 청구도 허용가능한지에 관하여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 같지 않다.¹⁴⁾ 사실 청구된 비용이, 만약 그것이 중재당사자가 아닌 보험자나 다른 배상자가 부담한다면 그것이 한 당사자의 비용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추가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보고된 경우를 보면 이러한 비용은 중재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¹⁵⁾

III. 중재비용의 결정

ICC중재규칙 제3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원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보수비율보다 높거나 낮게 중재인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가 진행 중인 어느 시점이라도 중재법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의 조항은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중재법원으로 하여금 중재인 보수비율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는 비용에 대한 결정이 행하여지는 시기에 관한 것이다.

1. 중재인 보수비율에서 이탈가능성

Arbitral Tribunal;”).

- 12) M. Bühler, “Awarding Cost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 Overview”, ASA Bull(2004), pp.269-276.
- 13) Awards in ICC Case Nos.6345, 6564, 6670 and 6959, ICC Bull., Vol.4, No.1(1993), pp.44-48.
- 14) J. G. Wetter and C. Priem, op. cit., pp.326-327.
- 15) Award in ICC Case No.7006, ICC Ct. Bull., Vol.4, No.1(1993), p.49.

동 규칙은 중재법원이 정해진 보수비율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어떤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인지에 대한 결정은 중재법원에 맡기고 있다.

보수비율이 갖는 이점은, 중재인은 중재개시 시에 자신이 받을 보수를 알고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중재법원은 가능한 여기서의 이탈을 꺼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중재인이 중재를 위하여 소비한 시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보상을 받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과도한 보상을 받는다면 중재법원은 중재인이 정해진 보수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기보다 이탈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재법원이 중재인의 보수를 보수비율에서 정해진 최저금액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반대로 보수비율에서 대부분의 이탈은 중재법원이 비율상의 최대금액을 늘리는 경우이다. 중재법원이 중재인 보수를 비율이상으로 조정하는 목적은 분쟁금액, 중재인이 소비하는 시간 및 당사자의 행위 등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뒤 중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의도이다.

중재법원은 중재인에게 비율상의 최대 금액 이상으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납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법원이 그렇게 하기 전 사무국은 통상 당사자에게 중재법원이 비율에서 이탈하고자 함이 적절하다는 점을 통지한다. 한편 당사자는 중재인의 보수가 비율에서 이탈가능 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예납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2. 중재판정부의 비용결정 권한

ICC중재규칙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중재비용은 중재가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최종판정에서 그 부담자와 책임비율이 결정된다. 이를 비용이 최종판정 전에는 결정되어 할당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재법원이 비율표를 근거로 더 일찍 중재인의 보수와 ICC관리비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재비용이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재인들

은 중재의 최종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인들의 최종판정 전 비용할당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중재인들은 중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부판정(partial award)에서 비용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기를 원할 수 있다. 중재인들은 역시 일부판정에서 자신들은 중재의 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할권이 없어 결국 문제의 당사자가 중재과정에 자신을 부적절하게 포함시킨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일부판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

ICC중재규칙 제31조 제2항의 둘째 문장은 이에 관하여 중재인에게 명백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제31조 제2항에 규정한 중재인의 권한은 이를 비용이 중재의 종결 시까지 결정되지 않는다 해도 중재법원이 결정하는 금액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중재인이 한 당사자를 중재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들이 중재 종결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명령하여 제외된 당사자에게 그가 ICC에 납부한 비용과 중재에서 발생된 상당한 법적 비용과 다른 비용에 대한 예납금 부분을 보상하도록 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IV. 중재비용의 할당

ICC중재규칙 제31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최종 판정은 중재비용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및 관련 당사자 간의 책임배분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배경

위의 조항은 동 규칙이 중재판정부의 종국판정에서 중재비용과 그 할당을 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판정이 「종국」(final)이어야 한다는 것은 중재가 종결되면 중재인의 보수와 ICC관리비용을 중재인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종국」판정에 대한 동 규칙상의 언급은, 당사자 간 유효한 중대합의가 없다는 결정이 중재를 종결시키는 효과를 가질 때와 같이 분쟁

의 시비에 관한 결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중재인으로 하여금 비용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실제로 관할권을 거절한 중재판정부가 비용을 판정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중재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¹⁶⁾ 또한 다른 당사자의 청구 철회에 따라 한 당사자의 요청으로 ICC중재인이 비용을 판정하는 데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ICC중재규칙 제31조 제3항에서 중재판정부의 비용의 결정과 할당에 관한 조항은 제29조에 따라 판정의 정정과 해석 요청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¹⁷⁾

2. 비용의 결정자

ICC중재규칙 제31조 제3항은 종국판정에서 중재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shall fix)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재인이 결정할 중재비용은 판정부가 선임한 전문가의 보수와 비용 및 당사자의 경비이다.¹⁸⁾ 중재인 보수나 중재인 경비 및 ICC관리비용은 중재법원에서 결정된다. 더구나 중재인은 한 당사자의 경비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정도까지를 추적하여 이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각 당사자가 자신들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중재인이 결정하면 이와 관련하여 중재인이 추가로 결정할 것이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 및 ICC관리비용은 중재법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후 사무국을 통하여 중재인에게 연락하며, 제27조에 따라 판정초안이 중재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여기에 삽입된다.

중재인이 결정할 당사자의 법적 비용과 기타 비용은 통상 제27조에 따라 중재법원이 검토할 판정초안에 나타난다. 그렇지만 중재인은 판정초안이 중재법원에서 검토된 후에 이들 비용을 삽입한 경우 중재규칙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미국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¹⁹⁾

16) S. Greenberg and M. Secomb, "Terms of Reference and Negative Jurisdictional Decision: A Lesson from Australia", *Arb. Int.* Vol.18, No.2(2002), p.125.

17) B. W. Daly,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of Arbitral Awards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ICC Ct. Bull.*, Vol.13, No.1(2002), p.61.

18) "fix"란 용어 대신 ICC 중재규칙 프랑스어판에는 "liquid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liquide"는 종국판정이 "마지막으로 비용을 다룬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중재인의 비용은 중재판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판정이 무효화되면 중재인 관련 결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 및 ICC관리비용은 중재판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중재법원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판정결과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²⁰⁾

3. 비용의 할당

중재인들은 당사자가 중재비용을 어떠한 비율로 분담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이와 관련하여 코멘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중재인은 판정문에서 비용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면 어느 당사자라도 중재진행과정에서 중재비용에 대하여 공식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다 해도 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점차 비용 상환에 관한 청구가 ICC중재의 구제요청의 실질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금액이 큰 중재에서 비용청구 금액이 몇 백만 달러가 되는 경우에는 흔한 일이다. 당사자와 중재인의 태도와 관행은 관할권에 따라 비용문제에 대한 접근이 다르며 상당한 다양성을 나타낸다.²¹⁾

결국 어떤 당사자들은 중재비용을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떤 당사자들은 조합한 의견개진을 하고, 또 어떤 당사자들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밀한 항변서를 제출한다. 이에 대한 ICC중재인들의 접근방식도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많은 중재판정은 이 문제에 관하여 약간의 언급만 하는 반면 어떤 경우는 비용문제가 초기의 부분판정에서 사건의 시비가 가려진 후에 별도의 종국판정의 주된 사안이 될 수도 있다.²²⁾

제31조 제1항에 따라 중재인들은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대로 중재비용을 할당할 완전한 관할권(complete jurisdiction)을 갖고 있다. UNCITRAL 중

19) Compagnie des Bauxites de Guinée v. Hammermills, Inc.,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A. No.90-0169(May.29.1992).

20) M. J. Mustill and S. C. Boyd,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England", Butterworth, 2nd ed., 1989, pp.245-246.

21) M. O'Reilly, "Rethinking Costs in Commercial Arbitration", Arbitration, Vol.69, No.2 (2003), p.122; J. Gotanda, "Awarding Costs and Attorney's Fe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1, No.2(1999), p.16.

22) J. G. Wetter and C. Priem, op. cit., p.334.

재규칙은 원칙상 패소자에게 중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 규칙은 이와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²³⁾ 또한 중재인의 재량권도 어떤 관련 법적 요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²⁴⁾

중재인이 비용을 할당하는 것을 보면 가끔은 그들의 국가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비용할당과 관련하여 3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첫째, 모든 비용을 당사자 가운데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정하는 것이다. 영국의 일반적 규정은 승소한 소송당사자가 비용에 대한 배상권한을 갖는다.

둘째,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에서 지배적인 접근방식은 청구와 항변의 상대적인 성공여부를 고려하여 비용을 승패비율로 할당하는 방법이다.

셋째, 또 다른 가능성은 중재비용을 반반씩 분담하거나 또는 각 당사자는 자신이 지출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중재판정부는 관리비용과 중재인의 보수 및 비용과, 중재 당사자에 의하여 발생된 법적 비용 및 기타 비용과 다르게 다루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1991년 ICC중재법원의 사무국은 중재인이 ICC사건에서 중재비용의 할당을 처리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ICC중재에서 내려진 종국판정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인은 자신이 신청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로, 중재인은 48사건 중 39사건에서 피신청인에게 중재인의 보수, 비용 및 ICC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청구에 대한 성공비율로)을 부담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렇지 만 중재인은 종종 중재비용을 양당사자에게 나누어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중재에서 완전히 승소하였으나 각자가 분쟁유발에 똑같이 기여한 경우이고, 다른 사건은 신청인이 거의 100% 승소하였으나 클레임 청구가 다소 늦었다는 이유로 중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²⁵⁾

둘째, 신청인이 결정적으로 승소하는 경우에도, 중재인은 가끔(48사건 중 24사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법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이것은 중재인이 협의의 중재비용과 당사자 간의 법적 비용을 동

23) UNCITRAL Arbitration Rules(1998), Art .40(1).

24) M. Bühlner, op. cit., pp.253-256.

25) Y. Derains & E. A. Schwartz, "A Guide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nd ed., 2005, p.372.

일한 기준으로 취급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한 사건을 검토해 보면, 2인의 스위스 변호사와 1인의 미국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승소비율이 80%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협의의 중재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명령하면서 법적비용에 관하여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정하였다.

셋째, 신청인은 청구한 금액이 약 1/2만 피신청인이 지급하도록 판정이 내려지거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승소비율이 같은 경우 중재인은 각 당사자가 협의의 중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각자의 법적 비용은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판정이 내려졌다.²⁶⁾ 영국의 단독 중재인이 판정한 사건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청구의 56%의 승소판정을 받았는바, 중재인은 피신청인에게 협의의 중재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법적비용의 50%를 상환하도록 판정하였다. 다른 한 사건의 경우 한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의 60%를 승소했는바, 피신청인은 협의의 중재비용의 60%를 부담하지만 신청인의 법적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도록 판정이 내려졌다.

넷째, 신청인은 중재에서 자신이 청구한 금액의 1/2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중재인은 종종 협의의 중재비용을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또는 신청인이 그 전액을 부담하도록 판정했다. 그렇지 만 후자의 경우 중재인은 신청인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가 완전히 패소한 어떤 사건에서 중재인은 협의의 중재비용을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보다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정했다.

신청인이 청구된 금액의 비교적 낮은 비율을 받도록 판정이 내려진 경우 협의의 중재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거나 또는 승패비율에 따라 부담되도록 판정되었다.

다섯째, 신청인은 청구한 금액의 1/2보다 더 적게 지급 받은 앞의 총36사건 가운데 24사건에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법적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정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3사건은 사건의 판정결과에 비례하여 법적비용을 할당하였다. 신청이 기각되거나 철회된 5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모든 통상적 법적비용을 지급하도록, 2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법적비용의 실질적인 부분을 부담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2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법

26) Y. Derains & E. A. Schwartz, op. cit., pp.372-373.

적비용의 2/3을 지급하도록 판정이 내려졌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재인을 ICC중재에서 비용을 할당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고려하고 또 어떤 때에는 악의와 비협조적 행위에 벌칙을 주면서 가끔 자국의 국민적 편견, 중재의 실질적 판정결과 및 당사자의 행위 등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을 선택해 왔다. 그렇지만 궁극적 결정이 무엇이든 중재인들은 중재법원이 제25조 제2항에 따라 중재인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대하여 판정이유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V. 결론

ICC중재규칙을 포함한 모든 중재규칙은 중재비용의 할당권한을 중재판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비록 중재비용의 항목별 금액의 결정은 미리 확정된 비율을 기준으로 중재법원이 결정하는 항목과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항목이 있지만, 이를 합하여 당사자 간 부담비율을 확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권한이다.

어떤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인의 보수와 ICC관리비용을 당사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당사자의 법적 비용이나 기타 비용과 분리하여 할당기준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당사자가 협의의 중재비용의 할당권한을 중재판정부에 주지 않고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고 각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변호사 보수 등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중재조항에 첨부할 수 있다.

"All cost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and the arbitral institution]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equally; each party shall bear the expenses of its own counsel, experts, witness and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its case."

만약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중재비용의 할당권한을 부여하지만 여기에 각자의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자 할 경우 중재조항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첨부할 수 있다.

"The arbitrators may include their award an allocation of the costs and expenses of arbitration, but they shall not have the power to allocate or

award attorneys' fees."

그렇지만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중재비용과 각자의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장이 중재조항에 첨부될 수 있다.

"The arbitrators are authorized to include in their award an allocation to any party of such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attorneys' fees, as the arbitrators shall deem reasonable."

만약 당사자가 중재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할당을 판정결과와 명시적으로 연계하기를 원한다면 다음 문장이 중재조항에 첨부될 수 있다.

"The arbitrators may award to the prevailing party, if any, as determined by the arbitrators, it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attorneys' fees."

계약당사자는 중재합의 시 선택되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점검하여, 중재관련 비용의 종류와 이를 비용의 결정방법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비용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기대와는 달리 중재판정부가 종국판정에서 이를 결정하게 된다.

參考文獻

- Award in ICC Case No.7006, ICC Ct. Bull., Vol.4, No.1(1993).
- Awards in ICC Case Nos.6345, 6564, 6670, 6959, ICC Bull., Vol.4, No.1(1993).
- Bühler, M., "Costs in ICC Arbitration: A Practitioner's View", Am. Rev. Int. Arb.(1992).
- _____, "Awarding Cost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 Overview", ASA Bull(2004).
- Byrne, D., "Payment of Advances on Fees to Arbitrators in ICC Proceedings", ICC Ct. Bull., Vol.7. No.2(1996).
- Daly, B. W.,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of Arbitral Awards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ICC Ct. Bull., Vol.13, No.1(2002).
- Derains, Y. & Schwartz, E. A., "A Guide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nd ed., 2005.
- Gotanda, J., "Awarding Costs and Attorney's Fe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1, No.2(1999).
- Greenberg, S. and Secomb, M., "Terms of Reference and Negative Jurisdictional Decision: A Lesson from Australia", Arb. Int. Vol.18, No.2(2002).
- Mustill, M. J. and Boyd, S. C,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England", Butterworth, 2nd ed., 1989.
- O'Conor, R. M.,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Arbitration Rules for the Time Being: China Agribusiness v. Balli Trading", Int. Arb. L. R., Vol.1, No.1(1997).
- O'Reilly, M., "Rethinking Costs in Commercial Arbitration", Arbitration, Vol.69, No.2(2003).
- Wetter, J. G. and Priem, C., "Costs and their Alloca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m. Rev. Int. Arb., Vol.2(1991).
- ICC Rules of Arbitration(1998)

ABSTRACT

A Study on Determination and Allocation of Arbitration Costs in ICC Rules of Arbitration(1998)

Oh, Won Suk

The Arbitration costs provided in Article 31 consist of arbitrators' fees, arbitrators' expenses, ICC administrative expenses, expenses of experts appointed by the Arbitral Tribunal, and parties' costs. Among them the first three items are independently determined by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while another two items are determined by the arbitrator and each party. The three items determined by the Court are communicated by Secretariat to the Arbitral Tribunal for inclusion in the award following the approval of the draft submitted to the Court.

Also the final award may decide which of the parties shall bear them or in what proportion they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According to Article 31(3), the arbitrators have complete jurisdiction or discretion to allocate the costs. Three common approaches are as follows;

First, all of the costs are borne by the losing party. Second, all of the costs are allocated in proportion to the outcome of the case.

Third, all of the costs determined by the Courts are shared equally by the parties and both parties bear their own costs.

But, both parties may include inten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For example, if the parties wish to ensure that the arbitration costs be shared equally and that the arbitrator make no allocation of costs or fees, the following sentence could be added to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ir contract.

"All cost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and the arbitral institution]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equally; each party shall bear the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attorneys' fees, of its own counsel, experts, witness and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its case"

And also, if the parties wish expressly to link any allocation of costs, and fees to the result of the award the following could be added to the arbitration clauses.

"The arbitrators may award to the prevailing party, if any, as determined by the arbitrators, it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attorneys' fees"

Key Words : Allocation of Arbitration Costs, ICC Rules of Arbitration